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4.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4.05.(금)	24.04.16.(화)	24.04.17.(수)	24.04.18.(목)	24.04.24.(수)	24.04.27.(토)~ 24.05.05.(일)	24.05.07.(화)~ 24.05.09.(목)

I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상담 전화(1660-2772)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5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사실이 적발된 자는 그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4.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4.16.(화)	24.04.17.(수)	24.04.18.(목)	24.04.24.(수)	24.04.27.(토)~ 24.05.05.(일)	24.05.07.(화)~ 24.05.09.(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10:00 ~ 14:0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방문제출 (사전예약제 운영) - 당첨자(예비자포함) 서류검수 필수 ■ 구비서류안내 - 청약신청유형별 구비서류 지침 ■ 운영시간 : 10:00 ~ 16:00	■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

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중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문서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택과-10552호(2024.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9번지 일원[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공동주택 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7~28층 12개동 총 929세대
[특별공급 120세대(다자녀가구 92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4000127	01	114.9621	114	114.9621	31.2395	146.2016	87.7855	233.9871	71.5732	471	47	14	61	410	24
	02	119.9422A	119A	119.9422	32.3943	152.3365	91.5884	243.9249	74.6737	99	10	3	13	86	4
	03	119.9730B	119B	119.9730	32.3062	152.2792	91.6119	243.8911	74.6929	152	15	5	20	132	8
	04	135.9742A	135A	135.9742	36.8166	172.7908	103.8305	276.6213	84.6549	102	10	3	13	89	4
	05	135.9796B	135B	135.9796	37.1623	173.1419	103.8346	276.9765	84.6583	102	10	3	13	89	4
	06	211.6191P	211P	211.6191	60.5564	272.1755	161.5934	433.7689	131.7500	2	-	-	-	2	-
	07	233.8898P	233P	233.8898	64.5633	298.4531	178.5994	477.0525	145.6153	1	-	-	-	1	-
합 계									929	92	28	120	809	44	

■ 주택형 표시

공고상(청약시)주택형	114.9621	119.9422A	119.9730B	135.9742A	135.9796B	211.6191P	233.8898P
약식표기	114	119A	119B	135A	135B	211P	233P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 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 44세대는 총공급세대수 929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114	119A	119B	135A	135B	211P	233P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7	10	15	10	10	-	-	9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3	5	3	3	-	-	28
합 계	61	13	20	13	13	-	-	12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라인별)	총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증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4-12-26	2025-05-11	2025-09-26	2026-02-11	2026-07-26	2027-01-11	
114	471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층	19	618,870,000	320,300,000	32,030,000	971,200,000	20,000,000	77,120,000	97,120,000	97,120,000	97,120,000	97,120,000	97,120,000	97,120,000	291,360,000
			2층	23	618,870,000	339,572,727	33,957,273	992,400,000	20,000,000	7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297,720,000
			3층	24	618,870,000	358,936,364	35,893,636	1,013,700,000	20,000,000	81,370,000	101,370,000	101,370,000	101,370,000	101,370,000	101,370,000	101,370,000	304,110,000
			4층	24	618,870,000	378,209,091	37,820,909	1,034,900,000	20,000,000	83,490,000	103,490,000	103,490,000	103,490,000	103,490,000	103,490,000	103,490,000	310,470,000
			5~9층	120	618,870,000	392,663,636	39,266,364	1,050,800,000	20,000,000	8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105,080,000	315,240,000
			10~19층	235	618,870,000	402,300,000	40,230,000	1,061,400,000	20,000,000	8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318,420,000
			20층 이상	26	618,870,000	411,936,364	41,193,636	1,072,000,000	20,000,000	8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107,200,000	321,600,000
			2층	4	645,679,000	357,746,364	35,774,636	1,039,200,000	20,000,000	83,920,000	103,920,000	103,920,000	103,920,000	103,920,000	103,920,000	103,920,000	311,760,000
119A	99	103동 1호, 104동 1호, 107동 1호, 111동 1호	3층	4	645,679,000	378,019,091	37,801,909	1,061,500,000	20,000,000	86,150,000	106,150,000	106,150,000	106,150,000	106,150,000	106,150,000	106,150,000	318,450,000
			4층	4	645,679,000	398,200,909	39,820,909	1,083,700,000	20,000,000	88,370,000	108,370,000	108,370,000	108,370,000	108,370,000	108,370,000	108,370,000	325,110,000
			5~9층	20	645,679,000	413,382,727	41,338,273	1,100,400,000	20,000,000	90,040,000	110,040,000	110,040,000	110,040,000	110,040,000	110,040,000	110,040,000	330,120,000
			10~19층	40	645,679,000	423,473,636	42,347,364	1,111,500,000	20,000,000	91,150,000	111,150,000	111,150,000	111,150,000	111,150,000	111,150,000	111,150,000	333,450,000
			20층 이상	27	645,679,000	433,564,545	43,356,455	1,122,600,000	20,000,000	9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112,260,000	336,780,000
			1층	4	645,845,000	351,050,000	35,105,000	1,032,000,000	20,000,000	8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309,600,000
119B	152	101동, 102동	2층	8	645,845,000	371,595,455	37,159,545	1,054,600,000	20,000,000	85,460,000	105,460,000	105,460,000	105,460,000	105,460,000	105,460,000	105,460,000	316,380,000
			3층	8	645,845,000	392,140,909	39,214,091	1,077,200,000	20,000,000	8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323,160,000
			4층	8	645,845,000	412,595,455	41,259,545	1,099,700,000	20,000,000	89,970,000	109,970,000	109,970,000	109,970,000	109,970,000	109,970,000	109,970,000	329,910,000
			5~9층	40	645,845,000	427,959,091	42,795,909	1,116,600,000	20,000,000	9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334,980,000
			10~19층	74	645,845,000	438,231,818	43,823,182	1,127,900,000	20,000,000	92,790,000	112,790,000	112,790,000	112,790,000	112,790,000	112,790,000	112,790,000	338,370,000
			20층 이상	10	645,845,000	448,504,545	44,850,455	1,139,200,000	20,000,000	93,920,000	113,920,000	113,920,000	113,920,000	113,920,000	113,920,000	113,920,000	341,760,000
			1층	4	731,983,000	387,197,273	38,719,727	1,157,900,000	30,000,000	85,790,000	115,790,000	115,790,000	115,790,000	115,790,000	115,790,000	115,790,000	347,370,000
			2층	4	731,983,000	410,288,182	41,028,818	1,183,300,000	30,000,000	88,330,000	118,330,000	118,330,000	118,330,000	118,330,000	118,330,000	118,330,000	354,990,000
135A	102	103동 3호, 104동 3호, 107동 3호, 111동 3호	3층	4	731,983,000	433,288,182	43,328,818	1,208,600,000	30,000,000	9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120,860,000	362,580,000
			4층	4	731,983,000	456,288,182	45,628,818	1,233,900,000	30,000,000	93,390,000	123,390,000	123,390,000	123,390,000	123,390,000	123,390,000	123,390,000	370,170,000
			5~9층	20	731,983,000	473,560,909	47,356,091	1,252,900,000	30,000,000	95,290,000	125,290,000	125,290,000	125,290,000	125,290,000	125,290,000	125,290,000	375,870,000
			10~19층	40	731,983,000	485,015,455	48,501,545	1,265,500,000	30,000,000	96,550,000	126,550,000	126,550,000	126,550,000	126,550,000	126,550,000	126,550,000	379,650,000
			20층 이상	26	731,983,000	496,560,909	49,656,091	1,278,200,000	30,000,000	97,820,000	127,820,000	127,820,000	127,820,000	127,820,000	127,820,000	127,820,000	383,460,000
			1층	4	732,012,000	359,170,909	35,917,091	1,127,100,000	30,000,000	8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112,710,000	338,130,000
135B	102	103동 2호, 104동 2호, 107동 2호, 111동 2호	2층	4	732,012,000	381,534,545	38,153,455	1,151,700,000	30,000,000	85,170,000	115,170,000	115,170,000	115,170,000	115,170,000	115,170,000	115,170,000	345,510,000
			3층	4	732,012,000	403,898,182	40,389,818	1,176,300,000	30,000,000	87,630,000	117,630,000	117,630,000	117,630,000	117,630,000	117,630,000	117,630,000	352,890,000
			4층	4	732,012,000	426,352,727	42,635,273	1,201,000,000	30,000,000	9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5~9층	20	732,012,000	443,080,000	44,308,000	1,219,400,000	30,000,000	91,940,000	121,940,000	121,940,000	121,940,000	121,940,000	121,940,000	121,940,000	365,820,000
			10~19층	40	732,012,000	454,352,727	45,435,273	1,231,800,000	30,000,000	93,180,000	123,180,000	123,180,000	123,180,000	123,180,000	123,180,000	123,180,000	369,540,000
			20층 이상	26	732,012,000	465,534,545	46,553,455	1,244,100,000	30,000,000	94,410,000	124,410,000	124,410,000	124,410,000	124,410,000	124,410,000	124,410,000	373,230,000
211P	2	101동 3호, 102동 3호	19층	1	1,139,199,000	1,729,637,273	172,963,727	3,041,800,000	304,180,000	-	304,180,000	304,180,000	304,180,000	304,180,000	304,180,000	304,180,000	912,540,000
			23층	1	1,139,199,000	1,757,273,636	175,727,364	3,072,200,000	307,220,000	-	307,220,000	307,220,000	307,220,000	307,220,000	307,220,000	307,220,000	921,660,000
233P	1	111동 2호	27층	1	1,259,088,000	2,138,101,818	213,810,182	3,611,000,000	361,100,000	-	361,100,000	361,100,000	361,100,000	361,100,000	361,100,000	361,100,000	1,083,3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밸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밸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실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119B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114, 119A, 135A, 135B, 211P, 233P 타입의 주택형은 견본주택 미건립 또는 이형모형을 전시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시 분양안내문 및 설계 도서 등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및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중도금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등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등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4.24.(수) ~ 2024.05.03.(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4.2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4.04.27.(토) ~ 2024.05.05.(일) 10:00~16:00까지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함.

■ 계약체결 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서류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04.27.(토)~2024.05.05.(일), (9일간, 10:00~16:00 까지)•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p>※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p>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인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격확인 서류 및 소명자료 미제출 시 계약체결일에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 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 서류접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에 상기 해당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제출기간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명만 제출 가능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 제출 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며, 이때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업주체 및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 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1660-2772)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공통서류,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제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제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인감도장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O	복무확인서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p>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추가서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 이행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노부모 부양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등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신청 시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시에도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써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4.05.07.(화) ~ 2024.05.09.(목) (3일간, 10:00 ~ 16:00)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정당계약기간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수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여, 이로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input checked="" type="radio"/>		계약금 입금내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input checked="" type="radio"/>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input checked=""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input checked="" type="radio"/>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input checked="" type="radio"/>		자금조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대금+발코니확장공사비+추가선택품목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input checked="" type="radio"/>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input checked="" type="radio"/>	추가 개별통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가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input checked="" type="radio"/>		무주택 소명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input checked=""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input checked="" type="radio"/>		위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내 비치(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input checked="" type="radio"/>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input checked="" type="radio"/>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은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DGB대구은행	504-10-483461-9	한국자산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2동 501호 홍길동 : 1020501홍길동 기재)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비 고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2024-12-26	2025-09-26	2026-07-26		
114	76,100,000	7,610,000	7,610,000	7,610,000	7,610,000	45,660,000	
119A	78,900,000	7,890,000	7,890,000	7,890,000	7,890,000	47,340,000	
119B	77,400,000	7,740,000	7,740,000	7,740,000	7,740,000	46,440,000	
135A	96,600,000	9,660,000	9,660,000	9,660,000	9,660,000	57,960,000	
135B	87,700,000	8,770,000	8,770,000	8,770,000	8,770,000	52,620,000	
211P	259,80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155,880,000	
233P	315,0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189,000,000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비확장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비확장 요청이 없을 시에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등의 시공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 후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로 인한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 및 유리, 기타 확장부 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및 수량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169-6281-09	한국자산신탁(주)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① 추가선택품목 –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유상옵션 품목	공급금액					비고	
		114	119A	119B	135A	135B		
시스템 에어컨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택1	6,800,000	6,800,000	6,800,000	7,350,000	7,00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	10,300,000	-	-
	선택2-1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드레스룸 제습기		-	-	12,350,000	-	-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2,400,000	12,500,000	-	13,000,000	12,70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 드레스룸 제습기		14,600,000	14,750,000	-	15,000,000	14,800,000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텐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기존 냉매매립 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텐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 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 -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分	유상옵션 품목	공급금액					비고	
		114	119A	119B	135A	135B		
주방가전 (개별)	인덕션	3구 인덕션 (삼성 비스포크, NZ63B6657XW)	택1	920,000	920,000	920,000	-	-
		3구 인덕션 (데이코, DTI30M977BB)		3,870,000	3,870,000	3,870,000	-	-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DW60B5095UG)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와인셀러	빌트인 와인셀러 (데이코, DRW24980RAP) + 국산 수납장		택1	13,940,000	13,940,000	13,940,000	13,940,000	

		빌트인 와인셀러 (데이코, DRW24980RAP) + 외산톨장		-	-	-	27,400,000	24,600,000	
주방가전 (조합)	선택1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 +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3도어 + 국산 수납장	택1	5,570,000	5,570,000	5,570,000	5,570,000	5,570,000	
	선택2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 +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3도어 + 외산수납장 + 외산톨장		-	-	-	21,440,000	19,200,000	
	선택3	데이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선택4	데이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외산톨장		-	-	-	51,800,000	49,800,000	
	선택5	데이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와인셀러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선택6	데이코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와인셀러 + 외산톨장		-	-	-	65,100,000	63,400,000	
	선택7	빌트인 전기오븐(데이코, DOC24M977SM) + 식기세척기 (데이코, DDW24B899B00)		6,400,000	6,400,000	6,400,000	6,400,000	6,400,000	

-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입 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선택품목 -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유상옵션 품목	공급금액					비고	
			114	119A	119B	135A	135B		
현관	현관중문	3연동 수동 중문 (이건창호)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거실	거실벽 스타일업	거실 패브릭 시트판넬 마감	2,600,000	2,700,000	2,760,000	3,800,000	3,150,000		
	바닥 스타일업1	전실 유럽산 원목마루(스틸레)	택1	30,200,000	31,100,000	31,000,000	34,400,000	33,500,000	
	바닥 스타일업2	거실/주방/복도/팬트리 유럽산 타일 + 침실/알파룸 원목마루(스틸레)		20,360,000	21,000,000	-	22,700,000	22,100,000	
	바닥 스타일업3	거실/주방/복도/팬트리/알파룸 유럽산 타일 + 침실 원목마루(스틸레)		18,800,000	19,300,000	19,800,000	20,500,000	20,250,000	
	바닥 스타일업4	거실/주방/복도/팬트리 유럽산 타일 + 침실/알파룸 강마루		6,900,000	7,100,000	7,720,000	8,150,000	7,50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외산 키큰장/톨장 (아크리니아)	-	-	-	13,760,000	12,550,000		
		주방 홈바 (아틀라스콩코드 세라믹상판)	-	-	3,500,000	-	-		
안방	ドレス룸 스타일업	고급 벽판넬형 시스템가구(135타입 유리슬라이딩 도어적용)	11,350,000	9,850,000	16,400,000	13,300,000	19,950,000		
	불박이장	고급 유리 불박이장	7,050,000	7,050,000	7,050,000	-	7,370,000		
침실2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1,600,000	1,600,000	1,600,000	1,750,000	1,750,000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570,000	570,000	-	600,000	-		
욕실	욕실 스타일업1	유럽산 포세린 벽타일 + 젠다이하부 엔지니어드스톤	택1	2,980,000	2,980,000	2,980,000	5,090,000	5,090,000	
	욕실 스타일업1-1	유럽산 포세린 벽타일 + 젠다이하부 엔지니어드스톤 + 고급환기시스템(공용욕실)		3,550,000	3,550,000	3,550,000	6,240,000	6,240,000	
	욕실 훤	고급환기시스템(공용욕실)		630,000	630,000	630,000	1,250,000	1,250,000	135: 공용, 침실1욕실

조명	조명스타일업1	(거실)직간접조명(알토) + 복도/주방 고급매입등(알토)	택1	7,050,000	7,100,000	7,450,000	8,500,000	5,400,000	
	조명스타일업2	(거실)직간접조명(알토) + 복도/주방 고급매입등(알토) +침실 고급직부등(알토)		-	-	-	-	7,000,000	
		(거실)직간접조명(알토)+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알토) + 복도/주방 고급매입등(알토) + 침실 고급직부등(알토)		8,750,000	8,850,000	8,650,000	10,150,000	-	

④ 공급대금 납부비율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자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 납부계좌	하나은행	148-910030-29804	한국자산신탁(주)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가전기기 및 가구/마감재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품목 모델명 및 품번,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X

참고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는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별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로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광주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12억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준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 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멀티스포츠룸, 피트니스),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L카페, 코인세탁실, 용역원 휴게실, 맘스스테이션이 있습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본 사업장의 초등학교 배정은 화정남초등학교, 중학교는 3학교군에 배정될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단일학교군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배정 안내: 홈페이지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1282024-101-0002900	₩724,681,8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p>건축물 개요</p> <p>인증 번호 : G-SEED-P-2023-1387-5</p> <p>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p> <p>유 효 기간 : 2023.12.19. ~ 사용승인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p> <p>면적 : 231.546.3775m² (평가 연면적: 229,239.748m²)</p> <p>건축물 주된 용도 : (주)나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p> <p>설계자 : (주)나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p>종합등급 ★★☆☆</p> <p>2023년 12월 19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별개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p> <p>건축물 개요</p> <p>건축물명 : 광주광역시 중구광활공원(1지구) 특례화사업 공동주택 1BL 총공연도 : 20270630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9번지 일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28층 면적 : 231.546.3775m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p> <p>인증 번호 : 23-주-에-14-0225 발 기 자 : 박주철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 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경시 완료일</p> <p>인증 등급</p> <p>인증 등급 : 1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p>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면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th> <th>단면면적당 에너지저소요량 (kWh/m²/년)</th> <th>단면면적당 1차 에너지저소요량 (kWh/m²/년)</th> <th>단면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23.0</td> <td>64.1</td> <td>48.1</td> <td>13.1</td> </tr> <tr> <td>급수</td> <td>30.7</td> <td>35.7</td> <td>26.1</td> <td>7.2</td> </tr> <tr> <td>조명</td> <td>7.0</td> <td>5.6</td> <td>15.4</td> <td>2.6</td> </tr> <tr> <td>환기</td> <td>2.9</td> <td>8.1</td> <td>2.9</td> <td>1.4</td> </tr> <tr> <td>합계</td> <td>60.7</td> <td>108.3</td> <td>97.7</td> <td>24.3</td> </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낭비, 난방, 급수,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소량 : 건축물을 설치한 낭비, 난방, 급수,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배출, 기온, 풍속, 반사, 공기 흐름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낭방설비기기(설치된 VV1설치처지않은)건축물입니다.</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 첨언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p> <p>2023년 12월 12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2023년 12월 12일</p> <p>■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광주광역시 중구광활공원(1지구) 특례화사업 공동주택 1BL 2. 선 청 자 : 한국자산신탁(주) 3. 대 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9번지 일원 4. 생 능 등 급 : 4. 생 능 등 급 : 4★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6. 환경 관련 등급 : 6. 환경 관련 등급 : 6★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p> <p>■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광주광역시 중구광활공원(1지구) 특례화사업 공동주택 1BL 2. 선 청 자 : 한국자산신탁(주) 3. 대 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9번지 일원 4. 생 능 등 급 : 4. 생 능 등 급 : 4★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6. 환경 관련 등급 : 6. 환경 관련 등급 : 6★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p> <p>■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광주광역시 중구광활공원(1지구) 특례화사업 공동주택 1BL 2. 선 청 자 : 한국자산신탁(주) 3. 대 치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0-9번지 일원 4. 생 능 등 급 : 4. 생 능 등 급 : 4★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가 쇼 관 련 등 급 : 5★ 6. 환경 관련 등급 : 6. 환경 관련 등급 : 6★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생활 편의성 등급 : 7★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주거 편의성 등급 : 8★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기관 편의성 등급 : 9★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수리용기능 편의성 등급 : 10★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자연광 편의성 등급 : 11★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햇빛 편의성 등급 : 12★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환기 편의성 등급 : 13★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유통 편의성 등급 : 14★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주차 편의성 등급 : 15★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생활 편의성 등급 : 16★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 환경 편의성 등급 : 17★</p>	구분	단면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에너지저소요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1차 에너지저소요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CO2 배출량 (kg/m ²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3.0	64.1	48.1	13.1	급수	30.7	35.7	26.1	7.2	조명	7.0	5.6	15.4	2.6	환기	2.9	8.1	2.9	1.4	합계	60.7	108.3	97.7	24.3
구분	단면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에너지저소요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1차 에너지저소요량 (kWh/m ² /년)	단면면적당 CO2 배출량 (kg/m ²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3.0	64.1	48.1	13.1																																
급수	30.7	35.7	26.1	7.2																																
조명	7.0	5.6	15.4	2.6																																
환기	2.9	8.1	2.9	1.4																																
합계	60.7	108.3	97.7	24.3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해당없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인해 해당 항목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일조 분석 결과 * 준공 후 실제 일조량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측정기관	일조량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	분석결과
(주)엔텍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동 : 3호라인 2층~19층(18세대) - 105동 : 1호라인 1층~7층(7세대), 2호라인 1층~6층(6세대), 3호라인 1층~6층(6세대), 4호라인 3층~5층(3세대) - 106동 : 1호라인 2층~7층(6세대), 2호라인 2층~5층(4세대), 3호라인 2층~4층(3세대), 4호라인 2층~3층(2세대) - 107동 : 3호라인 2층~16층(15세대) - 108동 : 1호라인 1층(1세대) - 112동 : 1호라인 1층~8층(8세대), 2호라인 1층~5층(5세대), 3호라인 1층~4층(4세대) 	<p>신축예정인 주동형태 및 배치에 따른 일조환경을 전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 사업대상지 내 평균 세대일조권 확보율은 총 929세대 중 841세대 만족, 88세대가 불만족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조만족비율은 90.5%로 나타남.</p>

■ 일조 영향 평가 * 분석기준 : 동지일

동	세대수	총일조4시간 이상확보 세대수 (08:00 ~ 16:00)	연속일조 2시간 이상확보 세대수	수인한도	
				만족 세대수	만족비율(%)
101동	71	71	71	71	100%
102동	83	83	83	83	100%
103동	80	80	80	80	100%
104동	77	37	59	59	76.6%

105동	73	45	49	51	69.9%
106동	84	69	66	69	82.1%
107동	68	53	53	53	77.9%
108동	76	75	72	75	98.7
109동	76	76	72	76	100%
110동	78	78	75	78	100%
111동	79	79	79	79	100%
112동	84	70	62	67	79.8%
전체	929	820	823	841	90.5

■ 소음 측정 결과 * 준공 후 실제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측정기관	교통소음원(도로) 현황	측정결과
(주)정온테크	- 사업부지 동측 : 염화로(B=20~26m, 4~6차로), 염화로83번길(B=14~18m, 2~3차로), 염화로31번길(B=10m, 2차로) - 사업부지 남측 : 금화로(B=35~36m, 6~8차로)	금화로 - 낮 48.5(dB(A)), 밤 43.2(dB(A)) 염화로31번길 및 염화로83번길 - 낮 50.2(dB(A)), 밤 45.1(dB(A))

■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 최고층 : 실외 예측소음도가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된 층임.

구분	최하층	5층 이하 실외소음도			6층 이상 실외소음도			비고
		5층	평가	실외	최고층	평가		
101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7.3	51.1	기준이내	54.6	17F	기준이내
		야간	40.5	44.3	기준이내	47.7	17F	기준이내
101동 1호라인	후면	주간	45.4	47.7	기준이내	49.9	17F	기준이내
		야간	38.4	40.7	기준이내	42.8	17F	기준이내
101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7.0	50.4	기준이내	54.0	17F	기준이내
		야간	40.2	43.5	기준이내	47.2	17F	기준이내
101동 2호라인	후면	주간	42.2	43.5	기준이내	45.7	17F	기준이내
		야간	35.3	36.5	기준이내	38.7	17F	기준이내
101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7.1	50.0	기준이내	53.9	18F	기준이내
		야간	40.3	43.2	기준이내	47.1	18F	기준이내
101동 3호라인	후면	주간	42.6	44.3	기준이내	47.9	19F	기준이내
		야간	35.7	37.3	기준이내	41.0	19F	기준이내
101동 4호라인	전면	주간	46.6	49.5	기준이내	53.7	19F	기준이내

		야간	39.8	42.7	기준이내	46.9	19F	기준이내	
101동 4호라인	후면	주간	41.3	43.3	기준이내	45.9	18F	기준이내	
		야간	34.5	36.5	기준이내	39.1	18F	기준이내	
102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6.3	50.8	기준이내	54.3	20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9.6	44.1	기준이내	47.6	21F	기준이내	
102동 1호라인	후면	주간	44.8	46.9	기준이내	49.3	20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8.0	40.1	기준이내	42.5	21F	기준이내	
102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6.7	51.1	기준이내	54.5	21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40.0	44.4	기준이내	47.7	21F	기준이내	
102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6.4	39.1	기준이내	43.0	21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9.6	32.3	기준이내	36.2	21F	기준이내	
102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6.1	50.9	기준이내	54.1	20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9.4	44.1	기준이내	47.4	22F	기준이내	
102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6.0	38.5	기준이내	44.8	23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9.2	31.7	기준이내	37.9	23F	기준이내	
102동 4호라인	전면	주간	46.5	51.2	기준이내	54.2	22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9.8	44.4	기준이내	47.4	21F	기준이내	
102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7.5	39.6	기준이내	43.4	23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0.7	32.9	기준이내	36.7	23F	기준이내	
103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6.0	49.1	기준이내	52.6	27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9.2	42.3	기준이내	45.8	27F	기준이내	
103동 1호라인	후면	주간	37.8	39.1	기준이내	43.7	27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0.9	32.3	기준이내	37.0	27F	기준이내	
103동 2호라인	전면	주간	52.3	53.8	기준이내	56.0	26F	기준이내	
		야간	45.6	47.1	기준이내	49.3	24F	기준이내	
103동 2호라인	측면	주간	48.9	51.1	기준이내	53.4	17F	기준이내	
		야간	42.1	44.3	기준이내	46.6	18F	기준이내	
103동 3호라인	전면	주간	50.0	51.9	기준이내	54.1	22F	기준이내	
		야간	43.3	45.2	기준이내	47.4	22F	기준이내	
103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9.5	42.0	기준이내	45.7	28F	기준이내	
		야간	32.7	35.3	기준이내	39.0	28F	기준이내	
104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2.3	44.4	기준이내	48.2	26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5.5	37.6	기준이내	41.3	26F	기준이내	

104동 1호라인	후면	주간	36.9	38.1	기준이내	42.2	26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0.1	31.4	기준이내	35.7	26F	기준이내	
104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8.0	50.9	기준이내	54.1	26F	기준이내	
		야간	41.4	44.2	기준이내	47.4	26F	기준이내	
104동 2호라인	측면	주간	43.6	46.0	기준이내	49.4	26F	기준이내	
		야간	36.9	39.2	기준이내	42.6	26F	기준이내	
104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5.7	48.8	기준이내	52.1	25F	기준이내	
		야간	39.1	42.1	기준이내	45.5	26F	기준이내	
104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6.8	37.9	기준이내	42.6	26F	기준이내	
		야간	30.0	31.2	기준이내	36.0	26F	기준이내	
105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5.3	48.8	기준이내	51.4	18F	기준이내	1~2층(필로티)
		야간	38.4	41.8	기준이내	44.5	18F	기준이내	
105동 1호라인	후면	주간	42.9	45.3	기준이내	46.1	16F	기준이내	1~2층(필로티)
		야간	35.5	37.5	기준이내	38.7	16F	기준이내	
105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3.9	47.4	기준이내	50.5	19F	기준이내	
		야간	37.0	40.6	기준이내	43.6	19F	기준이내	
105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7.7	40.3	기준이내	42.9	19F	기준이내	
		야간	30.7	33.0	기준이내	35.7	19F	기준이내	
105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3.6	46.9	기준이내	49.8	19F	기준이내	
		야간	36.7	40.1	기준이내	42.9	19F	기준이내	
105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7.6	40.6	기준이내	43.6	19F	기준이내	
		야간	30.4	33.1	기준이내	36.4	19F	기준이내	
105동 4호라인	전면	주간	42.1	45.8	기준이내	48.6	19F	기준이내	
		야간	35.3	39.0	기준이내	41.7	19F	기준이내	
105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6.0	40.5	기준이내	44.3	19F	기준이내	
		야간	29.1	33.6	기준이내	37.5	19F	기준이내	
106동 1호라인	전면	주간	38.6	42.3	기준이내	48.2	22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2.1	35.6	기준이내	41.4	22F	기준이내	
106동 1호라인	후면	주간	39.6	42.0	기준이내	44.7	20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2.5	34.8	기준이내	37.7	20F	기준이내	
106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0.0	43.4	기준이내	48.2	22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3.3	36.6	기준이내	41.4	22F	기준이내	
106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6.0	38.8	기준이내	42.0	18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9.1	32.0	기준이내	35.2	18F	기준이내	
106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0.2	43.2	기준이내	47.7	22F	기준이내	1층(경로당)
		야간	33.4	36.4	기준이내	40.9	22F	기준이내	
106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6.7	39.7	기준이내	42.6	18F	기준이내	1층(경로당)
		야간	29.8	32.7	기준이내	35.7	20F	기준이내	
106동 4호라인	전면	주간	41.4	44.5	기준이내	48.2	22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4.6	37.7	기준이내	41.4	22F	기준이내	
106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3.5	36.5	기준이내	40.6	22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6.6	29.7	기준이내	33.9	22F	기준이내	
107동 1호라인	전면	주간	39.2	42.5	기준이내	47.0	23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32.5	35.8	기준이내	40.2	23F	기준이내	
107동 1호라인	후면	주간	28.0	35.0	기준이내	39.1	23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1.2	28.0	기준이내	32.5	23F	기준이내	
107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3.3	47.1	기준이내	51.8	23F	기준이내	
		야간	36.8	40.5	기준이내	45.2	23F	기준이내	
107동 2호라인	측면	주간	43.9	46.1	기준이내	49.5	23F	기준이내	
		야간	37.2	39.4	기준이내	42.8	23F	기준이내	
107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1.7	45.5	기준이내	50.2	23F	기준이내	
		야간	35.2	38.9	기준이내	43.6	23F	기준이내	
107동 3호라인	후면	주간	27.9	35.2	기준이내	39.9	23F	기준이내	
		야간	21.1	28.4	기준이내	33.2	23F	기준이내	
108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5.0	47.5	기준이내	49.4	18F	기준이내	
		야간	38.1	40.6	기준이내	42.5	18F	기준이내	
108동 1호라인	후면	주간	43.9	46.4	기준이내	47.8	15F	기준이내	
		야간	37.4	39.8	기준이내	41.2	14F	기준이내	
108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2.8	45.5	기준이내	48.2	18F	기준이내	
		야간	36.0	38.6	기준이내	41.3	18F	기준이내	
108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7.6	40.1	기준이내	42.6	18F	기준이내	
		야간	30.8	33.4	기준이내	35.9	18F	기준이내	
108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1.7	44.3	기준이내	47.8	20F	기준이내	
		야간	34.9	37.4	기준이내	40.9	20F	기준이내	
108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7.6	40.7	기준이내	43.9	20F	기준이내	
		야간	30.8	34.0	기준이내	37.2	20F	기준이내	

108동 4호라인	전면	주간	41.2	43.5	기준이내	47.3	20F	기준이내	
		야간	34.4	36.7	기준이내	40.5	20F	기준이내	
108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4.6	36.6	기준이내	41.4	20F	기준이내	
		야간	27.7	29.7	기준이내	34.6	20F	기준이내	
109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4.1	46.5	기준이내	48.4	18F	기준이내	
		야간	37.3	39.8	기준이내	41.6	16F	기준이내	
109동 1호라인	후면	주간	39.5	43.0	기준이내	44.3	11F	기준이내	
		야간	32.9	36.4	기준이내	37.7	10F	기준이내	
109동 2호라인	전면	주간	41.9	44.5	기준이내	47.5	18F	기준이내	
		야간	35.1	37.8	기준이내	40.8	18F	기준이내	
109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7.3	39.1	기준이내	41.9	18F	기준이내	
		야간	30.5	32.4	기준이내	35.2	18F	기준이내	
109동 3호라인	전면	주간	40.7	43.5	기준이내	47.5	20F	기준이내	
		야간	33.9	36.8	기준이내	40.7	20F	기준이내	
109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7.7	40.3	기준이내	43.6	20F	기준이내	
		야간	30.9	33.7	기준이내	36.9	20F	기준이내	
109동 4호라인	전면	주간	39.4	42.3	기준이내	46.8	20F	기준이내	
		야간	32.7	35.6	기준이내	40.1	20F	기준이내	
109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5.5	37.2	기준이내	42.1	20F	기준이내	
		야간	28.8	30.5	기준이내	35.5	20F	기준이내	
110동 1호라인	전면	주간	41.8	44.4	기준이내	46.5	19F	기준이내	
		야간	35.1	37.8	기준이내	39.8	19F	기준이내	
110동 1호라인	후면	주간	37.9	41.5	기준이내	43.8	19F	기준이내	
		야간	31.3	35.0	기준이내	37.3	19F	기준이내	
110동 2호라인	전면	주간	39.3	42.3	기준이내	46.0	19F	기준이내	
		야간	32.6	35.7	기준이내	39.3	19F	기준이내	
110동 2호라인	후면	주간	36.7	38.2	기준이내	41.7	19F	기준이내	
		야간	29.9	31.6	기준이내	35.1	19F	기준이내	
110동 3호라인	전면	주간	37.9	41.0	기준이내	45.8	20F	기준이내	
		야간	31.2	34.5	기준이내	39.1	20F	기준이내	
110동 3호라인	후면	주간	35.5	37.7	기준이내	42.5	20F	기준이내	
		야간	28.9	31.1	기준이내	36.0	20F	기준이내	
110동 4호라인	전면	주간	37.0	39.7	기준이내	45.2	20F	기준이내	

		야간	30.3	33.2	기준이내	38.6	20F	기준이내	
110동 4호라인	후면	주간	31.7	34.2	기준이내	39.7	20F	기준이내	
		야간	25.2	27.7	기준이내	33.2	20F	기준이내	
111동 1호라인	전면	주간	35.4	38.0	기준이내	45.7	27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28.8	31.5	기준이내	39.1	27F	기준이내	
111동 1호라인	후면	주간	26.1	28.2	기준이내	36.8	27F	기준이내	1층(필로티)
		야간	19.4	21.7	기준이내	30.5	27F	기준이내	
111동 2호라인	전면	주간	28.4	32.1	기준이내	44.0	27F	기준이내	
		야간	21.9	25.6	기준이내	37.5	27F	기준이내	
111동 2호라인	측면	주간	33.5	36.7	기준이내	45.6	27F	기준이내	
		야간	26.9	30.2	기준이내	39.0	27F	기준이내	
111동 3호라인	전면	주간	27.0	31.9	기준이내	43.1	27F	기준이내	
		야간	20.6	25.4	기준이내	36.7	27F	기준이내	
111동 3호라인	후면	주간	24.8	27.0	기준이내	35.6	27F	기준이내	
		야간	18.1	20.3	기준이내	29.2	27F	기준이내	
112동 1호라인	전면	주간	39.5	42.4	기준이내	45.5	21F	기준이내	
		야간	32.8	35.8	기준이내	38.8	21F	기준이내	
112동 1호라인	후면	주간	28.4	36.6	기준이내	43.2	20F	기준이내	
		야간	21.9	30.3	기준이내	36.8	21F	기준이내	
112동 2호라인	전면	주간	38.7	41.4	기준이내	44.7	21F	기준이내	
		야간	31.9	34.7	기준이내	38.1	21F	기준이내	
112동 2호라인	후면	주간	17.9	20.8	기준이내	30.6	21F	기준이내	
		야간	11.5	14.4	기준이내	24.3	21F	기준이내	
112동 3호라인	전면	주간	38.9	41.1	기준이내	44.8	21F	기준이내	
		야간	32.1	34.4	기준이내	38.1	21F	기준이내	
112동 3호라인	후면	주간	25.0	31.4	기준이내	40.3	21F	기준이내	
		야간	18.6	25.1	기준이내	33.9	21F	기준이내	
112동 4호라인	전면	주간	36.3	38.8	기준이내	44.0	21F	기준이내	
		야간	29.6	32.2	기준이내	37.3	21F	기준이내	
112동 4호라인	후면	주간	16.2	17.4	기준이내	28.0	21F	기준이내	
		야간	10.1	11.4	기준이내	22.0	21F	기준이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	(주)부흥이앤씨
감리금액(VAT포함)	5,325,947,000	836,519,000	429,000,000	1,172,030,237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위탁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시행위탁사)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조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시행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사,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준공전·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공원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공원공사비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йт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99, 4층 402호(치평동, 국제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200111-0585344	110111-0014764

※ 롯데건설(주)은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제반 인·허가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하여, 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참여하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XI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변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 및 마을숲은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준공시 지적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당 단지 외부에 있는 완충녹지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단지의 시설녹지, 기반시설(도로 및 용벽)등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자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수변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p>도로 및 기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훈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균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p>헬스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용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용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p>구역경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용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용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공통	<p>인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 현장은 2023년 8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0년 04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022년 11월 접수)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태양광 시스템이 일부동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일조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그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현장여건과 상품특화 및 개선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임. 단위세대내 현장여건에 따라 도어위치 일부조정 및 발코니내 FD, 수전, 콘센트 위치 등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후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고지 않음.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고지 않음.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단위세대 내 현관 신발장 1개소 및 현관 창고 1개소, 펜트리 1개소, 안방 회장대, 안방 드레스룸 1개소, 침실1 불박이장, 국산 주방가구는 기본제공 품목이며, 주택형별에 따라 제공 되는 사이즈 및 내부 구성 등의 형태는 상이할 수 있음. 1BL의 펜트타입(211PH, 233PH)의 경우 평면 특성상 침실1 불박이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침실1 드레스룸이 기본 제공 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엔지니어드스톤의 경우 일부 확장제공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됨.) 모든 타일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음.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유럽산 원목마루 특성상 찍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이 설치 되더라도 제작 시기에 따라 색상 및 수종이 상이해 보일 수 있음. 원목마루는 천연자재특성상 견본주택과 동일한 자재가 설치되었더라도 생산 시기 및 수종에 따라 색상 및 나뭇결의 무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표면의 나무 옹이는 랜덤하게 적용되므로 이는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원목마루는 표면 강도가 약한 자재이므로 사용자의 관리상 주의를 요하며, 입주 후 찍힘 및 긁힘 등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지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119B 타입이 견립되었으며, 타입에 따라 마감재가 상이하오니 이형타입의 적용 마감재를 확인 후 참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14 / 119A-B 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135A-B / 211-PENT / 233-PENT 타입은 GRAY(그레이)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여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단지는 확장시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이 중창임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음.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부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조성됨으로 103, 108동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은 현장여건과 상품특화 및 개선으로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고지 않음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수 있음. • 동 하부 지하2층 제연헬름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한 DA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헬름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출입구 하부 지하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105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입면은 석재마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는 제공됨. 단, 3년이 지난 시점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원파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원파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음.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 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106,109,110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일부동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해당 구간에는 각종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및 태양광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 이로 인한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고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부대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하여 인조잔디로 설치 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이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자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 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2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두 동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통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전 타입은 해당 주동 지상 ELEV.를 및 복도에 공용 세대창고가 설치될 예정임. 각 세대창고의 규모는 같은 타입이라도 설치 장소 및 주동 조합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공용홀에 설치되는 공용창고는 입주자 전체 공유시설로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권에 대하여는 준공 후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해야 함. 공용홀에 설치되는 공용창고는 공용홀의 구조 등에 따라 면적 및 형태가 상이함. 공용홀에 설치되는 공용창고는 입주자 전체 공유시설로 못질 등 벽체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함. 각 세대창고는 시건장치가 없으며, 세대창고 내부는 빈 공간만 제공됨 공용창고는 단지 홈네트워크 설비 및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지 않으며, 세대창고의 도어, 손잡이 등 디자인 및 사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차량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103, 108동 등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동 필로티 내부 및 동출입구 주변에 자전거보관소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 일부 필로티 진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동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동, 105동(일부), 108동, 109동, 110동, 112동은 별도의 주동 출입구가 설치되며,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일부), 106동, 107동, 111동은 필로티 출입구가 설치됨. 주동출입구 및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동 서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서측에 D.A(2개소), 동측에 D.A(2개소),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1동 북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북측에 +61.5에서 +67.5로 이동하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남측에 휴게시설 및 산책로, 북측에 조경시설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주동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의해 하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1동 저층세대(3층이하)는 남측에 위치한 중앙공원으로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2동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2동 북측에 중앙광장,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동측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저층세대(3층이하)는 남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102동 주동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의해 하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3동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3동 북서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북측에 중앙광장,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남측 데크하부(Lv+61.6)에 단지부출입구 및 부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주동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육상정원 및 테라스 등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하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3동 저층세대(3층이하)는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104동 3호라인 2층~19층(18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남측,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4동 남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동측에 중앙광장,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서측에 +61.6에서 +67.5로 이동하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에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105동 1,2,3,4호라인 저층세대(5층이하)는 남측, 동측, 서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105동 남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남측에 데크 상하부 휴게공간, 북측에 휴게공간 및 뒷밭, 썬큰 및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둘봄센터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1호라인 1층~7층(7세대), 2호라인 1층~6층(6세대), 3호라인 1층~6층(6세대), 4호라인 3층~5층(3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서측, 남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남측에 D.A(2개소),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06동 남측에 중앙광장,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북쪽에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공간, 서측에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북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북카페, 관리사무소, 게스트룸 등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저층세대(3층이하)는 북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 106동 1호라인 2층~7층(6세대), 2호라인 2층~5층(4세대), 3호라인 2층~4층(3세대), 4호라인 2층~3층(2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남측, 동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저층세대(3층이하)는 북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 107동 3호라인 2층~16층(15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북측에 D.A(2개소), 서측에 D.A(1개소),동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북카페, 관리사무소, 게스트룸 등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 휴게공간, 유아놀이터 및 데크상부 운동공간, 선큰, 북측에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북측에는 균린생활시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는 주민공동시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계단 1개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1개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는 1개층으로 설치된 어린이집(Lv+61.5)에 의해 저층세대(5개층이하)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55.5)에 의해 저층세대(5개층이하)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1호라인 1층(1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남측, 북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서측에 D.A(1개소), 동측에 D.A(1개소), 북측에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09동 남측에 휴게마당,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남측에는 균린생활시설, 북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동측에 +55.5에서 +56.5로 이동하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북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북측, 남서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서측에 D.A(1개소), 동측에 D.A(1개소),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10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공공보행통로, 북측에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남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동측에 +56.5에서 +61.5로 이동하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11동 남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1동 주동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의해 하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11동 저층세대(6층이하)는 남측, 서측에 위치한 중앙공원으로 인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높이는 달라질 수 있음.
- 111동 남측에 공공보행통로, 북측에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저층세대(6층이하)는 북측에 위치한 중앙공원으로 인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12동 남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서측에 D.A(1개소), 동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112동 남측에 휴게공간, 산책로,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동측에 +55.5에서 +61.5로 이동하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12동 1호라인 1층~8층(8세대), 2호라인 1층~5층(5세대), 3호라인 1층~4층(4세대)은 일조 분석 결과, 수인불만족 세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동별/ 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됨.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용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코어별 창호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함.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 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각동 하부 지하1, 2층에 제연헬름이 계획되어, 급기DA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헬름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임.
- BI 사인물은 위치 및 디자인, 크기는 분양홍보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	•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된 103동을 제외하고, 주동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2호조합 코어당 1대, 3호조합 코어당 2대 설치될 예정임.
외부코어	• 외부코어1(엘리베이터)은 103동 북서측에 설치되며, 지하1층부터 지상1층(GL 67.50)까지 운행할 수 있음 • 외부코어2(엘리베이터,계단실)는 101동 북측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상1층(GL 67.50)까지 운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코어3(엘리베이터, 계단실)은 106동 북측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하1층(주민공동시설) 및 지상1층(GL 67.50)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코어4(엘리베이터, 계단실)은 108동 남측에 설치되며, 지하2층(주민공동시설)부터 지상1층(GL 61.50)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코어5(엘리베이터)은 108동 남측에 설치되며, 지하2층부터 지상1층(GL 61.50)까지 운행할 수 있음 외부코어6(엘리베이터, 계단실)는 108동 북측에 설치되며, 지하2층(근린생활시설)부터 지상1층(GL 61.50)까지 운행되므로 근린생활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코어7(엘리베이터, 계단실)는 109동 북측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상1층(GL 61.50)까지 운행할 수 있음
무인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별 지하2층 주차장 주동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2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차자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7m를 초과하는 텁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함.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2층에 급속25대, 완속77대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장애인주차 폭 3.3M,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시설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충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レン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훈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부대 및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 부출입구 인근에 1개층 규모로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108동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일조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6동 북측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스포츠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이 105동과 108동 사이 지하2층에 설치됨. 또한, 채광확보 및 접근을 위한 선큰이 설치되고 외부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에듀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등)과 컬쳐시설(L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106동 북측 지하1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스카이라운지가 103동 상부 28층에 설치되고, 지상1층과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이로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당이 106동 하부 지상1층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집이 105동과 108동 사이 지상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다함께돌봄센터가 105동 북서측 지상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의 도서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구조체의 안전 및 하자방지 사항으로 인하여 각 실별 유효폭이 변경 될 수 있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로 설계되어 있음
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동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이 설치되며, 103동과 104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스, 상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데크형주문주 및 단지 부출입구 인접하여 데크형부문주가 설치될 예정임. 데크형주문주, 부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의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각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획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탑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획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른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 114, 119B타입 단위세대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를 위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천정고는 기준층, 필로티 및 부대시설 위층은 2.3m 입니다. 단, 지반층에 접하는 1층세대는 천정고 2.5m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을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작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깊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을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모든 무상 선택형 및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확장 미선택 시 기본 시공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짹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의 도어는 평시 개폐불가 및 물품적재, 보관 금지, 잠금장치 설치에 의한 법적, 물질적, 책임여부는 해당 세대에 있음. 세대내 층간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개폐방향 변경될 수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거실 아트월의 경우 확장세대에 한하여 유럽산 세라믹타일이 설치되며, 비획장세대는 아시아산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고 시공 범위는 확장형과 상이하므로 분양카탈록 및 견본주택 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프레임의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가구조명,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외산 주방가구의 경우 확장세대에 한하여 설치되며, 비획장 세대는 국산 주방가구 기본형으로 시공됨. 외산 주방가구는 타입별 시공되는 가구 브랜드가 상이하며 114 / 119A-B 타입은 다다(이태리산), 135A-B / 211-PENT / 233-PENT 타입은 아크리니아(이태리산)으로 시공되고,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함. 외산 주방가구 적용 범위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원활한 자재 수급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일부 국산가구가 혼합되어 설치 됨.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탁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135A-B 타입의 경우 침실1 내부에 욕실이 적용되어, 침실 불박이장 설치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 함.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깊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3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획장 세대의 외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임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이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맵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법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밸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다용도실 세탁기용 수전은 마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솔레어, 밸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수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기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텐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입주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밸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맵립 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밸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밸코니 선흘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자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의 위치는 타입별 현장 여건상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세대의 경우 침실과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타입별 현장여건상 다용도실내 세탁기와 건조기는 병렬설치에 제한될 수 있음. 다용도실내 설치위한 일부 가전/ 가구의 경우 출입문 크기, 방수턱 깊이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실내공간과 비난방공간인 밸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출입문은 관련에너지 기준에 맞는 단열성능을 확보하였음.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한종류를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밸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스타일업(마감재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주방 우물천정의 경우 조명 스타일업 유상 옵션 선택 시 시공되며, 타입별로 설치되는 디자인 및 사이즈가 상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실1,2 트윈형 옵션과 침실2의 불박이장 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함.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이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동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견본주택의 관리 및 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으며 견본주택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타 제작물 및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육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로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약정 행위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코니 선흘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을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사이버 견본주택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www.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com)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분양문의 : 1660-277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